

투자신탁 신탁약관 변경

1. 투자신탁의 명칭

신한 BNPP 봉쥬르 브릭스 플러스 주식투자신탁-자(H)

2. 신탁약관 변경 시행일 : 2008년 1월 31일

3. 신탁약관 변경 주요 내용:

- 변경사유 - 수탁고 증대를 위해서 고액 설정 법인고객을 위한 신규 클래스 설정

변경사항	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	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14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① <생략> 1. ~ 4. <생략> <u><신 설></u>	① <생략> 1. ~ 4. <생략> <u>5. 클래스 C2 수익증권</u> <u>6. 클래스 C3 수익증권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0조(수익증권의 판매 기준)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종류[ⓐ]</th> <th>투자자격[ⓑ]</th> <th>선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[ⓒ]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클래스 A1 수익증권[ⓐ]</td> <td>투자자격 제한없음[ⓑ]</td> <td>있음[ⓒ] (제 20-3 조 참조)[ⓐ]</td> </tr> <tr> <td>클래스 C1 수익증권[ⓐ]</td> <td>투자자격 제한없음[ⓑ]</td> <td>해당사항 없음[ⓒ]</td> </tr> <tr> <td>클래스 C-e 수익증권[ⓐ]</td> <td>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[ⓑ]</td> <td>해당사항 없음[ⓒ]</td> </tr> <tr> <td>클래스 C-w 수익증권[ⓐ]</td> <td>- 법에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 -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(Wrap)계좌를 보유한 자[ⓑ] -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[ⓑ] - 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[ⓑ]</td> <td>해당사항 없음[ⓒ]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류 [ⓐ]	투자자격 [ⓑ]	선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 [ⓒ]	클래스 A1 수익증권 [ⓐ]	투자자격 제한없음 [ⓑ]	있음 [ⓒ] (제 20-3 조 참조) [ⓐ]	클래스 C1 수익증권 [ⓐ]	투자자격 제한없음 [ⓑ]	해당사항 없음 [ⓒ]	클래스 C-e 수익증권 [ⓐ]	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[ⓑ]	해당사항 없음 [ⓒ]	클래스 C-w 수익증권 [ⓐ]	- 법에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 -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(Wrap)계좌를 보유한 자 [ⓑ] -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[ⓑ] - 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[ⓑ]	해당사항 없음 [ⓒ]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종류[ⓐ]</th> <th>투자자격[ⓑ]</th> <th>선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[ⓒ]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클래스 A1 수익증권[ⓐ]</td> <td>투자자격 제한없음[ⓑ]</td> <td>있음[ⓒ] (제 20-3 조 참조)[ⓐ]</td> </tr> <tr> <td>클래스 C1 수익증권[ⓐ]</td> <td>투자자격 제한없음[ⓑ]</td> <td>해당사항 없음[ⓒ]</td> </tr> <tr> <td>클래스 C-e 수익증권[ⓐ]</td> <td>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[ⓑ]</td> <td>해당사항 없음[ⓒ]</td> </tr> <tr> <td>클래스 C-w 수익증권[ⓐ]</td> <td>- 법에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[ⓑ] -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(Wrap)계좌를 보유한 자[ⓑ] -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[ⓑ] - 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[ⓑ]</td> <td>해당사항 없음[ⓒ]</td> </tr> <tr> <td>클래스 C2 수익증권[ⓐ]</td> <td>- 신규 매입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법인[ⓑ]</td> <td>해당사항 없음[ⓒ]</td> </tr> <tr> <td>클래스 C3 수익증권[ⓐ]</td> <td>- 신규 매입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법인[ⓑ]</td> <td>해당사항 없음[ⓒ]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종류 [ⓐ]	투자자격 [ⓑ]	선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 [ⓒ]	클래스 A1 수익증권 [ⓐ]	투자자격 제한없음 [ⓑ]	있음 [ⓒ] (제 20-3 조 참조) [ⓐ]	클래스 C1 수익증권 [ⓐ]	투자자격 제한없음 [ⓑ]	해당사항 없음 [ⓒ]	클래스 C-e 수익증권 [ⓐ]	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[ⓑ]	해당사항 없음 [ⓒ]	클래스 C-w 수익증권 [ⓐ]	- 법에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 [ⓑ] -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(Wrap)계좌를 보유한 자 [ⓑ] -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[ⓑ] - 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[ⓑ]	해당사항 없음 [ⓒ]	클래스 C2 수익증권 [ⓐ]	- 신규 매입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법인 [ⓑ]	해당사항 없음 [ⓒ]	클래스 C3 수익증권 [ⓐ]	- 신규 매입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법인 [ⓑ]	해당사항 없음 [ⓒ]
종류 [ⓐ]	투자자격 [ⓑ]	선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 [ⓒ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클래스 A1 수익증권 [ⓐ]	투자자격 제한없음 [ⓑ]	있음 [ⓒ] (제 20-3 조 참조) [ⓐ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클래스 C1 수익증권 [ⓐ]	투자자격 제한없음 [ⓑ]	해당사항 없음 [ⓒ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클래스 C-e 수익증권 [ⓐ]	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[ⓑ]	해당사항 없음 [ⓒ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클래스 C-w 수익증권 [ⓐ]	- 법에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 -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(Wrap)계좌를 보유한 자 [ⓑ] -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[ⓑ] - 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[ⓑ]	해당사항 없음 [ⓒ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종류 [ⓐ]	투자자격 [ⓑ]	선취판매수수료 부과여부 [ⓒ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클래스 A1 수익증권 [ⓐ]	투자자격 제한없음 [ⓑ]	있음 [ⓒ] (제 20-3 조 참조) [ⓐ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클래스 C1 수익증권 [ⓐ]	투자자격 제한없음 [ⓑ]	해당사항 없음 [ⓒ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클래스 C-e 수익증권 [ⓐ]	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전자매체(On-line)를 통한 수익증권 취득자 [ⓑ]	해당사항 없음 [ⓒ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클래스 C-w 수익증권 [ⓐ]	- 법에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 [ⓑ] -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(Wrap)계좌를 보유한 자 [ⓑ] -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 [ⓑ] - 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[ⓑ]	해당사항 없음 [ⓒ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클래스 C2 수익증권 [ⓐ]	- 신규 매입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법인 [ⓑ]	해당사항 없음 [ⓒ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클래스 C3 수익증권 [ⓐ]	- 신규 매입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법인 [ⓑ]	해당사항 없음 [ⓒ]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0-3조(선취판매수수료)	① < 생략 > ② < 생략 > ③ 클래스 C1 수익증권, 클래스 C-e 수익증권, 클래스 C-w 수익증권에는 선취판매수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	① < 생략 > ② < 생략 > ③ 클래스 C1 수익증권, 클래스 C-e 수익증권, 클래스 C-w 수익증권, <u>클래스 C2 수익증권, 클래스 C3 수익증권</u> 에는 선취판매수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23조(환매수수료)	① < 생략 > ② < 생략 > 1. < 생략 > 2. 클래스 C1 수익증권, 클래스 C-e 수익증권, 클래스 C-w 수익증권 가. 90 일미만: 이익금의 70% 나. 90 일이상 180 일미만: 이익금의 50% ③ < 생략 >	① < 생략 > ② < 생략 > 1. < 생략 > 2. 클래스 C1 수익증권, 클래스 C-e 수익증권, 클래스 C-w 수익증권, <u>클래스 C2 수익증권, 클래스 C3 수익증권</u> 가. 90 일미만: 이익금의 70% 나. 90 일이상 180 일미만: 이익금의 50% ③ < 생략 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40조(투자)	①< 생략 >	①< 생략 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<p>신탁보수)</p>	<p>②< 생략 > ③< 생략 > A. < 생략 > B. < 생략 > C. < 생략 > D. < 생략 > < 신규 ></p>	<p>②< 생략 > ③< 생략 > A. < 생략 > B. < 생략 > C. < 생략 > D. < 생략 > E. 클래스 C2 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,000 분의 [9.00]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 분의 [2.00] 3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,000 분의 [0.60]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[0.30] F. 클래스 C3 1. 자산운용회사보수율 : 연 1,000 분의 [9.00]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 분의 [1.00] 3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,000 분의 [0.60]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[0.30]</p>
<p>부 칙2 (변 경)</p>	<p>< 신규 ></p>	<p>제 1 조(시행일)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8 년 1 월 [31] 일부터 시행·적용 한다.</p>